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업무 지침

2019. 10. 16.



안 내 문

이 지침은
지자체 담당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가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한 해설서입니다.

이 지침 내용이
이전 해석, 지침 등과 다른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변경하고
이전 지침 등을 폐지한 것으로 봅니다.

이 지침 내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044-202-2476) 또는
콜센터(국번 없이 1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2019. 10. 16.

목 차

I. 의료법 제21조

① 요청권자

1. 환 자	1
2. 환자의 친족 또는 대리인	5
3.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	10

② 요청 접수

1. 요청방식	15
2. 접수창고 일원화 권고	16
3. 신청서류의 원용	16

③ 사본 제공

1. 사본의 형태	17
2. 발급 부서 및 담당자	17
3. 발급 가능 시간	17
4. 발급 소요 시간	17
5. 제공 방식	18
6. 발급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18
7. 담당 의사의 승인 불필요	18
8. 진료기록의 촬영	19

④ 제21조의 적용 범위(환자에 관한 기록의 범위)

1. 포함되는 기록	20
2. 포함되지 않는 기록	21

⑤ 기타

1. 최근 법제처 해석	22
2. 개인정보보호법과의 관계	23
3. 첨부 제출서류의 보존	23
4. 환자가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그 사본 제출 필요성	24

II. 의료법 제21조의2

① 의료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제1항) 25

②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경우(제2항) 26

[붙임]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관련 Q&A 27

I. 의료법 제21조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등의 제공)

① 요청권자

1. 환자 (의료법 제21조제1항)

(1) 환자 본인의 요청

가. 본인확인 방법

- 신분증 확인 (제시 또는 사본 제출, 이하 같음)

※ 신분증 범위

- 신분증 요건

: ① 공공기관이 발급, ② 성명, 사진, 생년월일 수록

- 신분증 예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청소년증, 공무원증, 국가유공자등록증 등

- 온라인 본인인증 등

※ 온라인 본인인증 가능

: 시행규칙 §13의3⑤ : 친족 또는 환자(법정대리인을 포함)가 환자 또는 본인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 그 요청자는 **신분증의 제시 또는 신분증 사본의 제출을 같음**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본인확인

1.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
2.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 또는 같은 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확인의 방법

☞ **환자의 편의 및 의료기관 행정 효율 제고를 위해 각 의료기관 여건에 맞는 온라인 본인인증 시스템 구축 및 온라인 신청 접수 시행을 권고함**

나. 입원 환자의 경우

- 입원 중 또는 퇴원 당일 환자가 본인의 진료기록 사본 발급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신분증 확인 또는 사본 제출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진료기록 사본을 제공할 수 있음

(2) 환자의 법정대리인의 요청

가. 법정대리인의 권한

- 환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있는 경우에 그 법정대리인은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하여 환자와 동일한 요건으로(제2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진료기록 사본을 요청할 수 있고,
- 또 환자 본인이 제3자를 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것처럼, 법정대리인도 제3자를 대리인으로 지정하여(법정대리인의 자필서명 동의서, 위임장 교부) 환자의 진료기록 사본을 발급받도록 할 수 있음

※ **법정대리인 신청 시 요건** :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및 법정대리인 본인 확인(신분증 확인 또는 온라인 본인인증)

※ **법정대리인이 지정한 대리인 신청 시의 구비서류** :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법정대리인의 자필서명 동의서와 위임장, 지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나. 미성년(만19세 미만)인 환자 친권자의 증명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등 친자관계임을 증명하는 서류
- 미성년자의 부모라도 친권이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의료기관이 그러한 사정을 알았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료기관이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친자관계임을 확인했다면 의료기관은 주의의무를 다 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다. 친권자 아닌 법정대리인(후견인)의 증명서류

- 성년후견인 등 후견인 선임에 관한 법원 결정문 등

(3) 법정대리인이 있는 경우 환자 본인의 신청 가능 여부 등

- 법정대리인이 있는 피성년후견인 또는 미성년자라도 '진료기록 사본 신청' 당시에 그 사무를 이해하고 처리할 능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자 본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고
- 또한, '위임'에 대한 이해 및 처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환자가 제3자를 대리인으로 지정하고 진료기록 사본 발급 사무를 위임하여 진료기록 사본을 발급 받도록 할 수도 있음
- 즉, 법정대리인이 있는 경우 법정대리인이 직접 신청 또는 대리인에게 위임(법정대리인의 자필서명 동의서, 위임장 교부)하는 것이 가능함은 물론, 환자의 의사능력 및 사무처리능력에 따라 본인이 직접 신청 또는 제3자를 대리인으로 지정하여 대리 신청(환자본인의 자필서명 동의서, 위임장 교부)하는 방법이 모두 가능

※ 환자가 미성년(만 19세 미만)인 경우

가. 법정대리인의 요청

-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법정대리인의 본인확인 후 신청 가능

나. 환자 본인의 요청

- 환자가 미성년자라면 법정대리인이 요청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미성년자라도 진료기록 사본 발급 사무를 이해하고 처리할 능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학생증, 청소년증, 여권 등)이나 가족관계 증명서 및 주민등록등초본 등을 제시하여 미성년 환자 스스로 요청 가능
- “14세 미만의 환자는 본인이 직접 요청할 수 없고 14세 이상은 법정 대리인이 요청할 수 없는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잘못된 해석으로, 환자의 14세 도달 여부와 관계없이 미성년자인 환자 본인의 사무처리 능력에 따라(통상 10세 이상) 환자가 직접 요청할 수 있음

다. 친족의 요청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 이들이 없는 경우 형제자매
- 환자의 신분증 사본(17세 이상인 경우에만), 환자의 자필서명 동의서(14세 이상인 경우에만), 가족관계증명서, 친족의 신분증 사본 제출(즉 14세 미만 환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친족의 신분증만으로 신청 가능)

라. 지정대리인의 요청(위임인이 법정대리인 또는 환자 본인)

- 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진료기록 사본 발급에 대한 위임은 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동의서와 위임장, 법정대리인 신분증 사본,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대리인에게 교부하고, 대리인은 여기에 자신의 신분증 사본을 더하여 의료기관에 제출하고 진료기록 사본 발급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 다만, 환자가 진료기록 사본 발급에 대한 위임의 의미를 이해하여 처리할 능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자 본인이 자필서명한 동의서와 위임장, 신분증 사본을 대리인에게 교부하여 대리인으로 하여금 진료기록 사본 발급을 요청하도록 할 수도 있음

2. 환자의 친족 또는 대리인

(1) 동의를 받은 친족(의료법 제21조제3항제1호)

※ 친족의 범위: 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 이들이 모두 없는 경우에 형제자매*

* 형제자매의 경우는 환자의 다른 친족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함(아래 양식 참고)

[참고]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을 위한 확인서

확인자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환자와의 관계	
환자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확인사항	상기 환자의 직계 존속·비속 및 환자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의 부존재	

본인(확인자)은 「의료법」 제 21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3의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상기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본인 (확인자)

(자필서명)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요청자의 신분증 사본 또는 온라인 본인인증 등
- 자필서명 동의서(사본 또는 전자문서(스캔본), 팩스 전송 등 가능)
- 친족임을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사본 또는 전자문서(스캔본) 가능)
- 환자의 신분증 사본 (환자가 교도소·구치소 수감 중인 경우 환자의 신분증을 수감확인서로 대체 가능)

(2) 동의를 받은 대리인(의료법 제21조제3항제2호에 따른 임의대리인)

가. 지정대리인의 구비서류

- 요청자의 신분증 사본
-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사본 또는 전자문서(스캔본), 팩스 전송 등 가능)
- 환자가 자필서명한 위임장(사본 또는 전자문서(스캔본), 팩스 전송 등 가능)
- 환자의 신분증 사본 (환자가 교도소·구치소 수감 중인 경우 환자의 신분증을 수감확인서로 대체 가능)

나. 환자가 친족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

- 대리인 자격에 제한이 없으므로 환자는 친족에게도 위임 가능
- 친족이 환자로부터 위임받은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할 필요 없고, 환자의 신분증 사본과 친족 자신의 신분증 사본, 환자의 자필서명 동의서와 위임장을 제출하여 진료기록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음

다. 환자의 동의 의사 재확인 필요 여부

- 대리인이 제출하는 동의서 주요 사항 기재가 누락되거나 기타 동의서의 위·변조가 의심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자의 동의 의사 재확인 불필요
- 대리인이 동의서 및 위임장 등 필요 서류를 갖추어 진료기록 사본 발급을 요청하였음에도 의료기관이 환자의 동의 의사를 재확인 한다는 등의 이유로 진료기록 사본 발급을 거부하거나 지연 발급하는 것은 「의료법」 제21조제3항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음

※ 동의서 작성 방법

○ 동의서 작성 주체 (동의서에 자필서명하는 자)

- 진료기록 사본을 발급에 대한 '동의' 권한은 환자 본인에게만 주어지는 것이므로 동의서 작성자(자필서명하는 자)는 환자 본인이어야 하나, 환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작성(자필서명)
- 다만 법정대리인이 있는 경우라도 환자의 의사능력 및 사무처리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환자 본인이 작성 가능

○ 자필서명 이외의 내용 작성 방법

: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은 자필서명 이외의 내용 작성에 대하여는 자필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므로 대리인의 대필 또는 전자문서 작성·출력한 후 환자가 자필서명하는 방법으로 작성 가능

○ '환자 본인이 직접 작성합니다'의 의미

- 최근 개정('18.9.28.시행)된 동의서식은 '발급범위(환자 본인이 직접 작성합니다)'와 '예시'를 추가하여 환자의 동의 의사를 명확하게 확인하도록 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급 대상이 되는 기록의 종류를 각각 열거하여 적시하여야 함.
- 발급범위 란에 '별첨으로 제출함'을 표시하고 별첨 서면에 환자에 관한 기록의 종류를 나열하여 체크방식으로 선택하는 방법도 가능

(3) 환자 동의 불가한 경우의 환자의 친족의 요청(의료법 제21조제3항제3호)

- 친족의 신분증 사본 또는 온라인 본인인증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본 가능)
- 환자의 동의 불가 사유에 따른 아래 '추가 서류' 제출

※ 추가 서류

- 환자가 사망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본 가능)
- 환자가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사본 가능)
-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본 가능)
-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사본 가능)

☞ 환자의 사망사실 또는 의식불명 등을 증명하는 서류와 관련하여, 해당 의료기관에서 사망, 해당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경우 등 의료기관이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 서류 제출 불필요

(4) 환자의 친족 또는 대리인으로부터 위임받은 대리인(민법상의 임의대리인)

가. 친족으로부터 위임받은 대리인

- 대리인은 친족이 직접 요청할 때 필요한 서류에 추가하여 친족이 대리인에게 작성·교부한 위임장(정해진 서식 없음)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의료기관에 제출
- 다만 '의료법 제21조제3항제1호의 환자의 동의를 받은 친족'이 위임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동의서(의료법 시행규칙 별지제9호의2서식)'에 대리인 위임에 대한 동의가 명시되어 있거나 별도의 동의 또는 위임(정해진 서식 없음)이 있어야 함

나. 대리인으로부터 위임받은 복대리인

- 대리인이 직접 요청할 때 필요한 서류에 추가하여 대리인이 복대리인에게 작성·교부한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의료기관에 제출
- 다만 환자가 대리인에게 교부한 동의서 또는 위임장(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2 또는 제9호의3 서식)에 복대리에 대한 동의 또는 위임의 의사가 명시적으로 나타나 있어야 함

3.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

(1) 의료법 제21조제3항 제4호 내지 제16호

- 제4호: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 제47조, 제48조 및 제63조에 따라 급여비용 심사·지급·대상여부 확인·사후관리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가감지급 등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공하는 경우
- 제5호: 「의료급여법」 제5조, 제11조, 제11조의3 및 제33조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권자 확인, 급여비용의 심사·지급, 사후관리 등 의료급여 업무를 위하여 보장기관(시·군·구),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공하는 경우
- 제6호: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215조 또는 제218조에 따라 검사, 경찰관 등이 요청하는 경우
- 제7호: 「민사소송법」 제347조에 따라 법원이 문서제출을 명한 경우
- 제8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8조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급여를 받는 근로자를 진료한 산재보험 의료기관(의사 포함)에 대해 그 근로자의 진료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 등을 요청하는 경우

- 제9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제2항 및 제14조에 따라 의료기관으로부터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받은 보험회사 등이 그 의료기관에 대하여 관계 진료기록의 열람을 청구한 경우
- 제10호: 「병역법」 제11조의2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이 병역판정검사와 관련하여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료기관의 장에게 병역판정검사대상자의 진료기록·치료 관련 기록의 제출을 요구한 경우
- 제11호: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라 공제회가 공제급여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에 대하여 관계 진료기록의 열람 또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 제12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이 진료기록 및 임상소견서를 보훈병원장에게 보내는 경우
- 제13호: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중재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 제14호: 「국민연금법」 제123조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이 부양가족연금,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 급여의 지급심사와 관련하여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을 진료한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 제14의2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따라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을 진료한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 가목: 「공무원연금법」 제92조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퇴직유족급여 및 비공무상장해급여와 관련하여 요청하는 경우

- **나목:** 「공무원연금법」 제93조에 따라 공무원연금공단이 퇴직유족급여 및 비공무상장해급여와 관련하여 요청하는 경우
- **다목:**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57조 및 제58조에 따라 인사혁신처장(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 포함)이 요양급여, 재활급여, 장애급여, 간병급여 및 재해유족급여와 관련하여 요청하는 경우
- **제14의3호:**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19조제4항제4호의2에 따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요양급여, 장애급여 및 재해유족급여의 지급심사와 관련하여 교직원 또는 교직원이었다던 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 **제15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7항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의 장이 장애 정도에 관한 심사와 관련하여 장애인 등록을 신청한 사람 및 장애인으로 등록한 사람을 진료한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관한 사항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 **제16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 및 제2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본부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의 역학조사 및 예방접종에 관한 역학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료기관의 장에게 감염병환자등의 진료기록 및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관한 진료기록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2) 의료법 제61조*에 따른 보고와 검사

- * **의료법 제61조(보고와 업무검사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명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을 시켜 그 업무 상황, 시설 또는 진료기록부·조산기록부·간호기록부 등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서 진술을 들어 사실을 확인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법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 ② 제1항의 경우에 관계 공무원은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이 기재된 조사명령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3) 타 법률 규정에 근거한 요청

가. 원칙적으로 **의료법 제21조제3항 각 호에서 정하는 경우가 아닌 한, 의료기관은 타법에 근거한 요청에 대해 진료기록 사본을 제공할 수 없음**

나. 다만 다음의 경우에 그 타법 규정에 따를 수 있음

○ 타법 규정에서 “**의료법 제21조에 불구하고**~”라고 명시한 경우

※ **예시** : 「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 제30조제3항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은 「**의료법**」 제21조에도 **불구하고** 보호의무자가 입원 등을 한 사람의 동의서와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고 제1항에 따른 기록의 열람·사본 발급 등 그 내용 확인을 요구하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 의료법 제21조 저촉여부에 대한 법제처 해석례

※ 법제처 15-0200, 2015. 6. 17.

「약사법」 제86조의6제1항에 따라 의약품안전관리원의 장이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요청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제출이 제한되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된다는 이유로는 그 제출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 법제처 15-0373, 2015.7.28.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가 의료인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의료인은 「의료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을 근거로 기록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② 요청 접수

※ 의료기관이 요청 접수 시에 궁극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은 ‘요청자가 정당한 권한자인지 여부이나, 이를 완벽하게 확인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법정서류를 구비했다면 적법한 요청으로 간주하여 처리함

1. 요청 방식

(1) 방문 요청

- 의료기관에 방문한 요청자의 신분증 확인 또는 온라인인증 등을 거쳐 기타 필요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

(2) 온라인 요청

- 본인(법정대리인 포함) 또는 친족은 온라인 본인인증을 거쳐 온라인 발급 신청 가능
- 온라인 본인인증 시스템이 없더라도 의료기관은 방문 수령(수령시 본인 확인)을 조건으로 온라인 요청 접수 가능

(3) 공문을 통한 요청

- 의료법 제21조제3항제 4호 내지 제16호에 따라 공공기관 또는 공무원이 요청하는 경우 기관장 명의의 공문 등으로 요청 가능
- 각 호에 해당하는 필요 범위 내에서만 진료기록 사본 제공 가능

2. 접수 창고 일원화 권고

- 환자측이 2이상의 진료과목과 관련한 진료기록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각 진료과에 별도 요청하지 않고 **단일창구를 통해 일괄 신청·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환자 편의 차원에서 보다 적절함**

3. 신청 서류의 원용

- (1) 의료법 제21조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라 진료기록 열람 또는 사본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는 그 신청 건마다 가족관계증명서, 동의서, 위임장 등을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 (2) 다만 의료기관이 환자측이 기 제출한 서류를 보존하고 있어서 그 내용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의료기관은 요청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기 제출 서류와 내용이 같고 내용 변동 가능성이 없는 서류 제출의 생략을 허용할 수 있음

③ 사본 제공

1. 사본의 형태

- 종이 또는 필름 등의 출력본
- 전자문서파일 또는 이를 저장한 저장매체(USB, CD 등) 가능
- ※ 현행법 하에서도 전자문서 형태의 진료기록 사본 제공이 가능하나,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계류중(윤일규의원 발의 '19.7.3)

2. 발급 부서 및 담당자

- 발급 부서 및 담당자는 의료기관 내 조직 및 업무분장 규정에 따라 정하며, 발급 담당자 자격 요건*에 대해 법령상의 제한 없음
- * 의료인, 비의료인 모두 가능

3. 발급 가능 시간

- 발급 담당자의 정규근무시간(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의료기관 여건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에 발급함이 일반적이나,
- 그 외 시간에 신청서류를 제출하더라도 요청자가 우편 또는 온라인 등을 통해 재방문하지 않고 제공받을 수 있도록 조치함이 타당

4. 발급 소요 시간

- (1) 평일 정규근무시간 내에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한 경우 즉시 발급이 원칙이며, 발급 준비에 수 시간이 소요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정을 신청자에게 설명하여야 함. 이 경우에도 불가피한 경우가 아닌 한 당일 발급을 요함
- (2) 온라인 신청의 경우에도 즉시 발급 또는 발급예정시간을 안내하여 제공할 것을 권고함

5. 제공 방식

- (1) 방문자에게 직접 교부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우편 송부, 팩스 또는 이메일 등 온라인 전송 방식 가능
- (2) 정당한 요청자가 지정*하는 주소, 팩스번호, 이메일 등으로 발송 가능

* 반드시 환자 본인의 주소, 이메일 등이 아니라도 환자측이 요청하는 곳으로 발송 가능

6. 발급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 (1) 동의서, 위임장 등 구비서류에 흠결이 있는 등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발급을 거부하는 것이 정당함
- (2) 진료비 납부는 진료기록 사본 발급 요건이 아니므로, 진료비 미납을 이유로 진료기록 열람, 사본 발급을 거부할 수 없음

※ 진료비 미납은 민사상 청구 등 별도 절차에 의하여 해결해야 할 것

7. 담당의사의 승인 불필요

- 「의료법」 제21조에 따라 열람 또는 사본 발급의 대상이 되는 '환자에 관한 기록'은 의료기관이 이미 생성·보존 중인 기록을 말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열람 또는 사본 등을 제공함에 있어서 담당 의사의 추가적인 확인 또는 승인 등은 필요하지 않음
- 따라서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이 정하는 모든 요건을 갖춘 적법한 요청에 대하여 단지 담당 의사의 승인 또는 확인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진료기록 사본 발급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제21조 제1항 후단 또는 제3항에 저촉될 수 있음

8. 진료기록의 촬영

- 진료기록 열람 권한이 있는 자가 열람 중에 이를 촬영하는 것도 의료법 제21조에 따른 권한에 포함되므로 권한자의 열람 및 촬영 요청이 있는 경우에 의료기관이 응해야 할 것이나,
- 정당한 열람 권한이 있는 자라도 각 의료기관이 정하는 열람 및 촬영 절차에 따라야 할 것

4 제21조의 적용 범위(‘환자에 관한 기록’의 범위)

1. 포함되는 기록

(1) 의료기관이 환자의 치료·진단 과정에서 보유하게 된 모든 기록

- 의료법에서 환자에 관한 기록에 대해 제한하여 규정하지 아니하므로 환자의 치료·진단 과정에서 의료기관이 보유하게 되는 모든 기록이 이에 해당함

※ 환자의 치료 등을 위해 다른 의료기관이 생성한 진료기록을 전달받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열람 또는 사본 발급 대상에 포함됨

- 다만 의료기관이 파기하여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진료기록에 대해서는 보존의무 위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열람 또는 사본 발급이 불가할 뿐만 아니라 발급 의무가 없음

(2) ‘환자에 관한 기록’으로부터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의 제증명서

- 의료기관이 추가 진단·진찰 하지 않고 이미 보유하고 있는 ‘환자에 관한 기록’으로부터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의 제증명서*도 이에 포함

* 예시: 진단서사본, 처방전사본, 진료확인서, 입퇴원확인서 등

(3) 환자가 제출한 각종 동의서, 위임장 등도 의료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동안 의료법 제21조 적용대상에 포함됨

2. 포함되지 않는 기록

(1) 발급에 관한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 진단서, 소견서, 처방전 등의 최초 발행: 의료법 제17조 및 제18조
-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최초 발행: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제1항, 제3항

※ 다른 규정에 따른 진단서, 소견서, 처방전 등 또는 진료비영수증, 세부내역서 등이라도 **최초 발급 이후의 그 사본 발급**인 경우에는 **의료법 제21조에 따른 발급 대상에 포함**

(2) 환자로부터 채취한 검체(조직 슬라이드 등)

- 검체로부터 얻어지는 검사·진단 결과는 진료기록으로서 의료법 제21조 적용대상이 되나, 검체 그 자체는 동 규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함

(3) 의료기관 종사자의 개인적인 메모

- 의료기관의 장이 관리·감독하는 환자에 관한 기록이 아닌, 의료기관 종사자의 개인 메모는 동 규정 적용 대상이 아님

(4) 진료기록을 열람 또는 로그인 기록 등

- 환자에 관한 기록에 대한 시스템의 접속 기록 또는 열람자 목록 등은 환자에 관한 기록으로 볼 수 없음

(5) 의료기관 밖의 환자 기록 등

- 의료기관 밖의 환자기록(환자가 사본 발급해 간 진료기록 등)은 일반 개인정보로서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됨

5 기타 관련 사항

1. 최근 법제처 해석

(1) 의료법 제21조제3항 제6호 관련

※ 법제처 18-0310, 2018. 8. 6.

【질의】 「의료법」 제21조제3항제6호에 따라 의료인 등이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른 임의제출로 환자에 관한 기록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환자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회답】 의료인 등은 환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환자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른 임의제출로 환자에 관한 기록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의료법 제21조제3항 제9호 관련

※ 법제처 18-0433, 2018. 12. 3.

【질의】 의료기관으로부터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받은 보험회사등이 「의료법」 제21조제3항제9호에 근거하여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 외에 사본 교부를 요청한 경우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이하 “의료인등”이라 함)는 사본 교부의 방식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하는지?

【회답】 의료인등은 사본 교부의 방식으로 환자에 관한 기록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개인정보보호법과의 관계

※ 개인정보보호법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의료법은 의료기관에서 환자 본인 이외의 제3자에게 환자정보가 제공되는 경우를 원칙적으로 금지할 뿐, 의료기관 이외의 자나 기관이 보유하는 환자정보, 진료기록 등은 의료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다른 개인정보와 마찬가지로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됨

3. 첨부 제출서류*의 보존 여부

- * 친족 또는 대리인이 환자의 진료기록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 의료기관에 제출하는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사본 등 개인정보 수록 자료
- 위와 같은 첨부서류의 보존 여부에 대해서는 의료법에서 정하는 바가 없고,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 의료기관은 적법발급 사실에 대한 증빙을 위해 첨부서류의 보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라 보존이 가능하나, 보존 목적에 상응하는 최소 범위의 정보만을 남겨서 보존하여야 하고(예컨대, 주민등록번호 뒷번호 삭제, 관련자 이외의 자에 대한 정보 전부 삭제 등), 증빙에 필요한 최소 보존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이 만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파기하여야 함
- 첨부서류를 보존하는 의료기관은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내부 규정을 마련하고 개인정보 보호·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참고] 개인정보보호법

-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제16조(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4. 환자가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그 사본 제출 필요성

- 종전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제4항은 환자가 진료기록 사본을 요청하는 경우에 본인확인 방법으로 신분증 제시만을 규정하였으나, 환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환자가 휴대폰으로 촬영한 신분증 사진 등 '신분증 사본'을 제시하는 경우에도 진료기록 사본 요청이 가능하도록 개정함('18.9.28.시행)
- 따라서 신분증을 제시하는 환자에 대해 신분증 사본의 제출까지 요구하는 것은 개정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타당하지 않음

Ⅱ. 의료기관 간 진료기록 전송 등
(의료법 제21조의2제1항 및 2항)

※ 의료법 제21조의2(진료기록의 송부 등)

- 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은 다른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으로부터 제22조 또는 제23조에 따른 진료기록의 내용 확인이나 진료기록의 사본 및 환자의 진료경과에 대한 소견 등을 송부 또는 전송할 것을 요청받은 경우 해당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그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환자의 의식이 없거나 응급환자인 경우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없어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동의 없이 송부 또는 전송할 수 있다.
- ②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응급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내원 당시 작성된 진료기록의 사본 등을 이송하여야 한다.

① 의료기관의 요청에 따른 경우(동조 제1항)

(1) 의료기관이 의료기관에 대해 요청

- 의료기관이 환자의 치료·진단 등을 위해 해당 환자의 과거 진료기록을 보유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요청
- 요청 방식에 대해 정한 바가 없으나, 요청자 및 해당 환자의 정보 및 필요한 자료를 명확하게 특정하여 요청 필요

(2) 진료기록의 내용 확인이나 진료경과 소견 등 요청

- 진료기록의 사본뿐만 아니라 해당 환자의 진료경과에 대한 소견 등 요청 가능

(3)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의 동의

- 환자 보호자의 범위는 법령에서 명확하지 아니하나, 의료법 제 21조에 따른 친족 또는 의료기관에 동행하여 보호자로 인정되는 자로 볼 수 있음
- 이 때의 동의 방식에 대하여는 정해진 바가 없고 반드시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2서식(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동의서)에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니며, 구두 동의도 가능
- 자료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환자 등의 동의 의사를 확인 후에 자료를 전송하여야 하나, 반드시 환자로부터의 직접 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고, 자료를 요청하는 의료기관으로부터 전달된 동의 의사를 확인하는 방법도 가능
- 환자의 의식이 없거나 응급환자인 경우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없어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동의 없이 송부 또는 전송할 수 있음

(4) 요청받은 의료기관은 그 요청에 응해야 함

-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이 그 요청에 응하는 방식이나 절차에 대하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가 없으며, 요청하는 의료기관의 요구 및 요청받은 의료기관 여건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전송 가능

2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경우(동조 제2항)

- (1) 의료기관이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경우 지체 없이 전송
- (2) 진료기록 사본 등 전송
- (3)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의 동의 불필요

붙임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관련 Q&A

Q1 진료기록 사본의 우편송부 또는 팩스나 이메일을 통한 전송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요청자의 요청이 적법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된 이후에는 환자의 요구 및 의료기관 여건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진료기록 사본의 제공이 가능합니다.

A1

따라서 내원한 환자에게 종이출력물 또는 전자기록을 저장한 USB, CD 등을 교부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우편송부 또는 팩스나 이메일을 통한 전송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정보 유출 사고 위험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Q2 환자의 동의서는 대리인이 대필하거나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출력해서 사용해도 되나요?

네, 됩니다.

A2

동의서 자필이 필요한 부분은 서명 부분입니다. 그 이외의 부분은 대필, 전자문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Q3 환자가 본인 진료기록의 사본 발급을 요청하면서 '의료기관이 제3자에게 직접 송부'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나요?

네, 있습니다.

A3

의료법 제21조제1항에 의해 환자 본인이 진료기록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 환자는 제3자에게 송부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환자의 요청에 응해야 합니다.

Q4 14세 이상의 미성년 환자는 친권자(법정대리인)가 진료기록 사본발급을 대리할 수 없나요?

아닙니다. 환자가 19세 미만인 미성년자인 경우에 14세 도달 여부와 관계없이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대리하여 진료기록 사본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환자가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부모인 친권자는 가족관계증명서로 친권자임을 증명하여 자녀의 진료기록 사본을 요청할 수 있고,

A4 또는 법정대리인이 대리인을 선임하여 자필서명 동의서 및 위임장,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교부하고 대리인으로 하여금 진료기록 사본을 발급받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환자가 미성년자라도 의사능력 및 진료기록 사본 발급 및 그 위임에 대한 사무처리능력이 인정되는 경우에 환자 본인이 단독으로 진료기록 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고,

제3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자필서명 동의서, 위임장, 환자 본인의 신분증 사본을 교부하고, 대리인으로 하여금 진료기록 사본을 발급받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Q5 환자는 친족에게 진료기록 사본 발급을 위임할 수 있나요?

네, 있습니다.

환자의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에서 친족을 제외할 이유가 없으므로, 환자의 친족은 환자의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A5 따라서 친족은 가족관계증명서를 구비하여 환자의 친족으로서 진료기록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도 있고, 환자의 위임장을 교부받아 진료기록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두 경우 모두 환자의 자필서명 동의서, 환자와 친족의 신분증 사본을 의료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Q6 환자의 친족이 대리인을 선임하여 진료기록 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나요?

네, 있습니다.

다만 환자의 친족이 의료법 제21조제3항제1호에 따라 환자의 동의를 받은 친족인 경우에는 환자의 동의서 상에 대리인 선임을 허락하는 환자의 의사(意思)가 명확하게 표시된 경우에 한합니다(동조동항제3호에 따라 환자가 동의할 수 없는 경우의 친족은 이와 같은 제한이 없습니다)

A6 친족이 선임하는 대리인은 (의료법 제21조제3항제2호에 따른 대리인이 아니며) 민법에 따른 임의대리인이므로 이 때 친족이 대리인에게 교부하는 위임장의 양식 등은 정해진 바가 없으나,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제9호의3서식에 준하여 작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친족이 선임한 대리인이 의료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친족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추가하여 ①친족이 대리인에게 작성·교부한 위임장과 ②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입니다.**

Q7 환자의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진료기록 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나요?

네, 있습니다.

다만 환자가 대리인에게 교부한 동의서 또는 위임장에 복대리인을 허용하는 환자의 의사(意思)가 명확하게 표시된 경우에 한합니다.

A7 환자의 대리인이 선임하는 복대리인은 (의료법 제21조제3항제2호에 따른 대리인이 아니며) 민법에 따른 임의대리인이므로 이 때 대리인이 복대리인에게 교부하는 위임장의 양식 등은 정해진 바가 없으나,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제9호의3서식에 준하여 작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복대리인이 진료기록 사본 발급 요청 시에 의료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대리인이 제출하는 서류에 추가하여 ①대리인이 복대리인에게 작성·교부한 위임장과 ②대리인 자신의 신분증 사본입니다.**

Q8 환자가 진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진료기록 사본 발급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나요?

아니요. 해당하지 않습니다.

A8 진료기록 사본 발급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요청자의 본인확인이 불가하거나 대리인으로서 제출하는 동의서, 위임장 등에 흠결이 있는 경우 등입니다.

Q9 의료기관은 담당의사의 확인 또는 승인 없이 진료기록 사본을 발급해도 되나요?

네, 됩니다.

A9 의료법 제21조는 의료기관이 보유하는 '이미 생성이 완료된 기록'에 관한 것이므로 정당한 권한자가 그 사본의 발급이나 내용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 담당 의료인이 추가적인 환자의 진찰, 진단 등을 필요로 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담당의사의 확인 또는 승인 없이 진료기록의 사본 발급 등이 가능합니다.

담당 의사의 확인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진료기록 사본 발급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경우에 의료법 제21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Q10 의료기관은 진료기록 사본 발급 시에 요청자가 제출하는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동의서 등을 반드시 보존해야 하나요?

아니요, 반드시 보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의료기관이 보존의 필요성을 판단하여 보존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A10 의료기관이 사본 발급과 관련한 추후 증빙을 위해 보존하기로 결정하였다면, 최소 정보만을 남겨서 증빙에 필요한 최소 기간만을 보존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내용의 개인정보관리규정을 마련하고 그에 따라 개인정보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Q11

저는 의료기관 종사자입니다. 환자가 제출한 다른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사본을 보존하고 있는데, 환자가 그 진료기록에 대해 다시 사본 발급을 요청합니다. 우리 병원이 생성한 진료기록이 아닌데, 환자의 요청에 응하여 사본을 발급해야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의료법 제21조의 '환자에 관한 기록'은 의료기관이 환자의 치료·진단 과정에서 보유하게 되는 모든 기록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A11

귀 의료기관이 생성한 진료기록이 아니고, 다른 의료기관이 생성하여 전달받은 진료기록이라도 귀 의료기관이 보존하고 있는 한, 환자의 요청에 응하여 진료기록 사본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Q12

저는 현재 B병원에서 치료받기 위해 과거 A병원의 진료기록이 필요한데, A병원에 방문하여 진료기록을 받아 올 형편이 못 됩니다. A병원이 B병원으로 직접 진료정보를 전송해 줄 수 있나요?

네, 있습니다.

A12

의료법 제21조의2 제1항은 의료기관이 의료기관에 요청하는 경우에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요청하는 진료 기록 등을 전송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환자는 B병원과 협의하여 B병원이 A병원에 본인의 진료기록 사본 등을 요청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이 의료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환자의 진료기록 사본 또는 소견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의
Q13 동의를 받고 전송해야 하는데, 이 때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동의는 동법 시행규칙 별지제9호의2서식에 의한 동의서를 받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시행규칙 별지제9호의2서식은 의료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A13 의료법 제21조의2 제1항에 따른 환자나 환자보호자의 동의 방식에 대하여는 제한이 없으므로 서면뿐만 아니라 구두 동의도 가능합니다.
